

-2026년 아산시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시행 계획 3차 공고(안)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아산시장

1. (사업명)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 (총사업비) 620백만원(국 40%, 도 6%, 시 14%, 자부담 40%)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620	248	37	87	248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4. (신청기간) 2026년 4월 7일 ~ 5월 8일 18:00까지(점심시간 및 휴일 제외)

5.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6.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 비용의 60%(부가가치세 제외)

7.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 방문 접수(선착순 접수가 아닌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나. 접수장소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 주소: 아산시 시민로 456, 의회동 3층, (☎ 041-540-2748)

8. (대상자 선정 알림) 2026년 6월 중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한하여
 선정 결과 개별 통보(예정)

9.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부(部)	비고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	-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	-
3	사업장 위치도	1	-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배출업체(보조사업자), 설치업체 각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	-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1	-
8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1	-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
11	보조금 반납 약속서	1	-
12	이행확인서	1	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13	사후관리 동의서	1	-

※ 구비서류 제출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원본) 1부 ⇒ '방문 제출'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본) / 엑셀파일 1부 ⇒ '이메일(gks2608@korea.kr) 제출'
-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0. (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조건)

(1) 지원대상

-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2) 사업 우선지원

-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② 기존 시설(공고 전일 기준, 부착계획서 제출)

(3) 지원제외 대상

- 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②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
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4) 지원조건

①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② 세부 지원 범위

- 사업장당 최대 지원금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금액은 사업자 자부담)
- 잔여 예산 발생 시 예비 후보자 추가 선정 지원

③ 사업장 선정 취소 조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선정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부착기한 내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지 못한 경우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또는 신청 사업장의 보완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11. (사업장 및 지원금액 선정 방법)

가. 지원사업장 선정 기준(자체평가표)에 따라 내부 평가

나. 예산 범위 이내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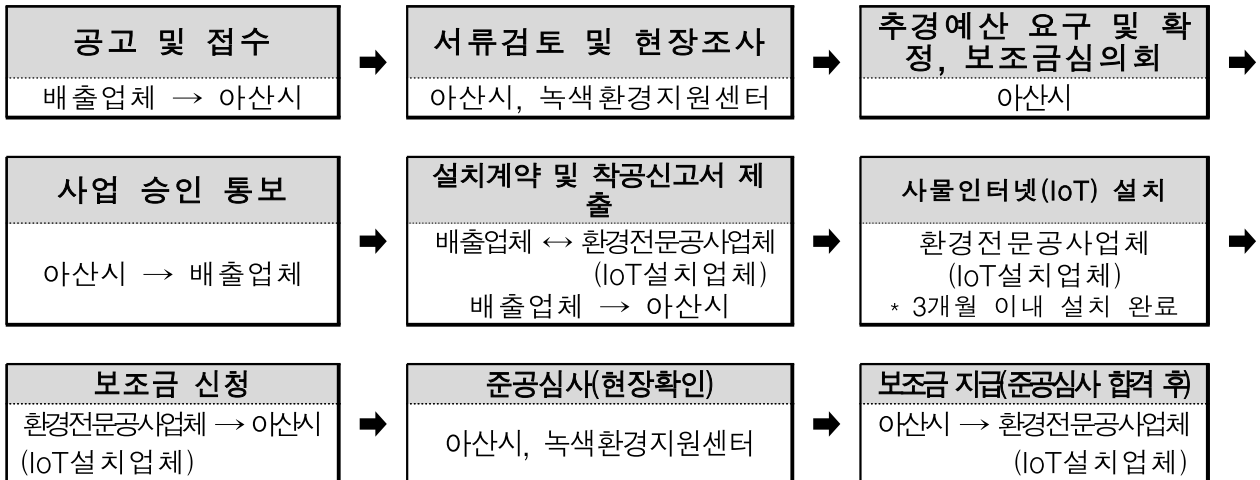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12. (사업장 선정 평가 항목)-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

- 설계내역의 적정성,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허가증 등) 정보의 정확성, 자부담금 부담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산시와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 선정.

13. (지원절차)



14.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신청서 등은 추후 별도 공지

나. 보조금 환수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15. 유의사항 등 기타 안내사항

가. 신청서 등 검토

- (1)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된 내용이 미흡하여 재보완 요청(2회에 한함)을 한 경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료 미흡 또는 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시 감점**

※ **보완 완료 여부에 따라 서류 초기 점수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초 서류 작성 시 유의**

※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 감점 또는 반려**

- (3)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사업승인: 사업승인 여부 통보(지원 확정 사업장에 한함)

- 사업 신청 후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순위를 정해 선정하므로 선정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녹색환경지원센터)

다. 허가 등 신청: 방지사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라.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1) 사업 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IoT 설치업체)와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 제출**
- (2)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 체결 기간 연장을 요청(1회에 한함)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체결 시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

마. 사물인터넷 설치

- (1)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
- (2)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연장 요청(1회에 한함)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업무편람” (2025. 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바. 준공심사

- (1)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 포함

- (2) 준공심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 자료가 미흡하여 재보완 요청(2회에 한함)을 한 경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차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4) 신청서의 설계 내역대로 제작·시공되어야 준공 가능

※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설계 근거, 변경도면, 예산 등)를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설계대로 제작·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사. 보조금 지급

(1)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2)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모두 보완된 이후 보조금 지급

(3)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4) IoT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신호의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16. (기타 사항)

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 평가 순위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환경보전과 (☎041-540-2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부착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설치비 보조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분	장치의 기능	비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별표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¹⁾	0 ~ 600A	0 ~ 500mmH ₂ O	-40 ~ 100°C	0 ~ 14pH
오차 ²⁾	±5% 이내			
동작온도 ³⁾	-20 ~ 60°C	-20 ~ 60°C	-20 ~ 60°C	0 ~ 80°C
온도보상	-	-	-	0 ~ 50°C ⁴⁾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⁵⁾) 4 ~ 20mA (표시장치 ⁶⁾)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붙임 1. (제출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제출서식)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사업 상세현황 1부. 끝.